

등록번호	감사담당관-3840
등록일자	2022.4.21.
결재일자	2022.4.22.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협 조			

2021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보고



서대문구
감사담당관

목 차

I. 감사개요	1
II. 감사대상 현황	1
III. 감사결과	2
1. 총 평	2
2. 지적사항 총괄표	2
3. 지적사항	3
4. 권고사항	4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5
1. 감사결과 처분 기준	5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	5
3.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통보	6
4.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6
V. 행정사항	7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	

2021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보고

I 감사 개요

□ 감사목적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기관정기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대행감사를 실시하여 지방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21. 6. 22.(화) ~ 7. 5.(월) (기간 중 10일)

□ **감사대상** : 전부서

□ 감사사항 및 범위

연번	분야	감사사항	감사범위
1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내역	2018.1.1. ~ 2021.5.30.
2	세무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여부	2016.1.1. ~ 2021.5.30.
3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4	회계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내역	2019.10.1. ~ 2021.5.30.
5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	2014.7.15. ~ 2021.5.30.
6	모범	적극행정으로 예산절감 및 국민편의 증진 등 모범사항	2018.1.1. ~ 2021.5.30.

II 감사대상 현황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현황(2018. 1. 1. ~ 2021. 6. 10.)

(단위 : 건, 백만원)

계		2018		2019		2020		202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854	58,452	2,670	15,119	2,590	17,016	3,259	18,853	1,335	7,464

□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2014. 7. 15. ~ 2021. 5. 31.)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부과금액
개발부담금 부과	6	2,047

□ 승소확정사건 현황(소 취하 포함) : 총 21건 (2019. 10. 1. ~ 2021. 5. 31.)

III

감사결과

1. 총 평

이번 감사는 감사원 대행감사로 감사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면서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실시되었다.

총 4개 분야 6개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제시한 중점 사항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7건의 지적사항(시정 1, 기관경고 4, 권고 2)을 확인하였다.

지적사항은 계약분야의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사항 및 세무분야의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미징수 사항에서 확인되었고, 그 외 감사사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2단계 경쟁 회피 목적 또는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업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격이 증가한 사실을 모른 채 기존 취득가격에 대한 취득세만을 징수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 여부 파악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 교육 실시와 관련 규정 숙지를 통한 업무 개선으로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명, 건, 천원)

합 계			징계	시정 (금액)	기관경고	개선요구	권고	통보	현지조치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7	-	30,708	-	1 (30,708)	4	-	2	-	-

3. 지적사항

1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을 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납품대상을 선정(이하 “2단계 경쟁”이라 한다)하여야 하고,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음.

- ⇒ **민관협치과(행위당시:문화체육과)**에서는 93,100천원 상당의 무인도서대출반납기 2대를 구매하면서 한번에 구매하지 않고 시기를 달리하여 같은 제품을 1억원 미만으로 각각 구매함으로써 2단계 경쟁을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
- ⇒ **안전치수과**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117,610천원 상당의 합성목재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 요청하면서 시기를 달리하여 1억원 미만으로 구매요청함으로써 2단계 경쟁을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
- ⇒ **토목과**에서는 세부품명번호가 동일한 LED보안등기구 2종을 구매하면서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은 채 총 168,176천원 상당의 LED보안등기구를 2개 업체로부터 각 74,800천원, 93,376천원 분할 구매한 사실이 있음.
- ⇒ **푸른도시과**에서는 세부품명번호가 동일한 경관조명기구 2종을 구매하면서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은 채 총 107,010천원 상당의 경관조명기구를 2개 업체로부터 각 97,020천원, 9,990천원 분할 구매한 사실이 있음.

2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기존에 신고한 과세표준 등이 증가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토지보상법」 제28조, 제8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로써 보상금을 지급한 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취득가격이 증액되어 과세표준이 변경될 경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세무1과에서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함.

- ⇒ **세무1과**에서는 가재울6재개발조합이 토지를 수용(162건)하면서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에 따라 기존 취득가격보다 1,880,822,572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사실을 모른 채 기존 수용재결에 따른 취득가격에 대한 취득세만을 징수한 사실이 있음.

※ 취득세 증액분(취득가격의 1%~4.6%) 및 가산세를 합하여 부과·징수 시정조치

4. 권고사항

1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관련 교육 및 이행 철저
<p>□ 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을 한 후 그 선정결과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이하 “2단계 경쟁”이라 한다)하여야 하고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음.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 또한 위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제안을 요청받은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달청 제3자단가물품을 납품요청하고자 하는 각 부서에서는 해당물품이 다수공급자 계약이 조달청과 체결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 비경쟁 제품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조달업체간 재경쟁을 통해 예산절감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함. <p>□ 권고사항 및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대한 정확한 규정 미숙지로 발생된 건이 대부분으로, 재무과에서는 전부서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대한 제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청 및 각 관서에서는 다수공급자 계약 건의 요청 시,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 또는 규정 미숙지로 인하여 1억원 미만으로 분할납품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조달청으로 납품요구해야 할 것임. 	
2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방안 마련
<p>□ 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취득가격에 증가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1과에서는 취득가격이 증가한 사실을 모른 채 기존 수용재결에 따른 취득가격에 대한 취득세만을 징수하게 됨. <p>□ 권고사항 및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취득세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 처분기준

- 징 계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 시 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 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통 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주의요구·개선요구·권고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지조치 :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 공무원 신분상 조치

- 훈 계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 주 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

- 개최일시 : 2021. 7. 23.(금) 10:00
- 심의위원 : 5명(감사담당관 및 각 팀장)
- 심의내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양정 심의
- 심의결과 : 별첨

3. 처분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통보

- 통보일시 : 2022. 4. 14.(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제1과-764호)
- 처분요구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 주의 4건, 권고 1건
 -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 시정 1건, 권고 1건

4.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명)

연번	부서	안 건 명	심의결과		
			처분 종류 ¹⁾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총 7건 (시정 1, 기관경고 4, 권고 2)				추징 30,708,000	
1	민관협치과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기관경고		
2	토목과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기관경고		
3	안전치수과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기관경고		
4	푸른도시과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기관경고		
5	재무과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관련 교육 및 이행 철저	권고		
6	세무1과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시정	추징 30,708,000	
7	세무1과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방안 마련	권고		

1) 처분종류

- 시 정 :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환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 의 :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교정 및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훈 계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 권 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V

행정 사항

□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 조치방법 : 붙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의 건별 ‘조치할 사항’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
 - 시정·기관경고 : 2개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
 - 개선요구·권고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
- ※ 2개월을 초과하는 사항은 2개월 이내 추진 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 집행계획에 따라 최종 결과 제출
- ▶ 조치결과 제출 기한 : 2022. 6. 10.(금)

- 붙 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